#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10279 제안연월일: 2025. 4.

<u>번호</u> 10279 제 안 자: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안전법	0007000	김도읍	204 10 00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일부개정법률안	2207026	의원 등 10인	'24.12.30.	소위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10인		심사	교통법안심사소위('25.4.15.)	
항공안전법		이수진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4.9.)	
일부개정법률안	2208840	의원 등 10인	'25.03.13.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4.15.)	
항공안전법	2222224	김도읍	107.00.10	상정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4.9.)	
일부개정법률안	2208991	의원 등 12인	'25.03.18.	소위 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5.4.15.)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4. 23.)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 및 유지 요건을 국제기준으로 정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에 서명한 회원국에 해당 국제기준에 따라 자격증명 제도를 운영할것을 요구함. 우리나라는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제도를 법령화하였으나 이 중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은 그 한정을 자격증명과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항공교통관제사자격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 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항공교통관제업무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신설 함(안 제2조).
- 나.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최소 취득연령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7호의2 및 별표).
-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유지하되 그 업무범위는 전문항공교통관제 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로 차등화함(안 제37조 및 별표).
- 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그 한정 취득을 위한 심사 내용을 규정하고, 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요건 및 심사 면

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

- 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훈련이수,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포함하는 기량 심사 의무에 관한 사항및 그 심사에 불합격 시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정지 등을 규정함(안 제38조의2).
- 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 합격하도록 규정하고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 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관제적성검사에 대한 효력정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
- 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 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함(안 제48조제1항).
- 차.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 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함(안 제58조제2항).
- 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함(안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 타. 관제적성검사 합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근거를 신설함(안 제134조

제9호).

- 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제 지식·기술 심사 및 관제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6조제 1항제13호의2 및 제16호의2).
- 하. 현재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공역(空域)"을 "공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무선 통신 등을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26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 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조종사"를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3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경량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 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로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 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제38조제1항 중 "자격증명"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 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심사"로 한다.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 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 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 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 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7호"를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로 한다.

제41조 중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를 "운항승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 (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 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 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를 "항공신체검사증명·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항공기· 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를 "항공기·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 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람 또는 항공신체검사"를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 로, "항공신체검사를 받을"을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 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 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제43조제1항·제4항"을 "제43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관제"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 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에따른"을 "제1항의"로 한다.

제8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제1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 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5조제2항"을 "제42조의2 제3항, 제135조제2항"으로 하고, "제10항의 규정"을 "제10항"으로, "수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사에 응시하는 자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별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의2 라목의 업무에 따른 행위

별표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따른 행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제4항·제5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34조제9호(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35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본다. 이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제34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했 혂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하다.

가. (생략)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 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연습은 제외한다)

다. • 라. (생략)

<신 설>

개 정 아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 라. (현행과 같음)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 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 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 ·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 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 다.

-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

   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

   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

   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

   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 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 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 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 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 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 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 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

6. ~ 10의5. (생략)

11. "비행정보구역"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수색 또는 구조에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2. ~ 26. (생 략) <u><신 설></u>

27. ~ 34. (생 략) <u><신 설></u>

무 등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업무
6. ~ 10의5. (현행과 같음)
11
공역-
•
12. ~ 26. (현행과 같음)
<u>26</u> 의2.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설치한 비행장관제
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
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u>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u>
<u>다.</u>
27. ~ 3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① 국가
는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 나. (생 략)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 리사 자격: 21세
- 2. (생략)
- ③ (생략)

사회	적 관	심을	높c	기고	항공	안
전문	화를	정착	시키	フ]	위하	여
	12월					
날로	정한디	 7.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 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 다.
- ③ 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 ①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조종사, 전문항 공교통관제사-----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

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9. (생략)

제36조(업무범위) ①・② (생 조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 정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2. (생략) <신 설>

<u>.</u>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9. (현행과 같음)
제36조(업무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
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
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
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 다만, 전문항 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 호에 따라 한정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u>항공기·경량항공기나 한</u> 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 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생략)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저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 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생략)<신설>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
관제시설
2
<u>항공기·경량항공기, 한</u>
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
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
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u>.</u>
③ (현행과 같음)
세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
<u>증명</u>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
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 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 통부장관이 제8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 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 련 과정을 이수할 것
-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

<u>4</u> )		
	제1항부터	제3

<u>항</u>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다.

1. ~ 5. (생 략) <u><신 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에</u>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u>항까지</u>
1. ~ 5. (현행과 같음)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어
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
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
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림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 심사-----

----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실적을 포함한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가 제1항에 따른 심사를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 그 효력의 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항공교통관제시 설에서 종사하는 전문항공교통 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한정의 효력정지 및 그 취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저 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 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 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3 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이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라 한다)를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 ③ (생 략)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 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 1. (생략)
- 2. <u>제35조제7호</u>의 자격증명을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 ② ~ ⑦ (생 략)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항공교
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방
식, 기준, 주기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서의 대여 등 금지) ①
<u></u> ম <u>]</u> 3
8조제5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u>.</u>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7호 또는 제7호의2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 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 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u>운항승무원 및 항공교</u> <u>통관제사</u>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다.

<신 설>

세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
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u>.</u>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① 제38 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은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적합 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 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에 합격 하여야 한다.

- ② 직전 관제적성검사에 불합 격한 사람으로서 그 검사일부 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 람은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적성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 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 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 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u>할 수</u>
<u>있다.</u>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3항에
따라 관제적성검사에 관	<u>한 업</u>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제적성검사의 합격	<u>취기준,</u>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u></u> 로교통
부렁으로 정한다.	
세43조(자격증명⋅ <u>항공신처</u>	<u>  </u> 검사
증명 •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
소 등) ①	

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

- 1. ~ 5. (생 략)
-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의2. ~ 30의2. (생 략)

31. <u>이 조</u>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 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 ③ (생 략) <신 설>

④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 하거나 심사를 받는 <u>사람 또는</u> <u>항공신체검사</u>를 받는 사람이

1. ~ 5. (현행과 같음)
6
된 고 리 _ 구 가 된
<u>항공기·경량항</u>
<u>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u>
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
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
제시설
세시설
6의2. ~ 30의2. (현행과 같음)
31. 이 조 및 제38조의2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사람, 항
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
- * 의제역까 우는 단세약장검사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 육증명)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 의 시험 및 취소 등에 관하여 는 제38조 및 <u>제43조제1항·제</u> 4항을 준용한다.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항공신체검
사 또는 관제적성검사
<u>⑥</u>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
육증명) ① ~ ③ (현행과 같
<u>о</u> )
<b>4</b>
<u>제</u> 4
<u> 3</u> 조제1항ㆍ제5항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 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 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생 략)

-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 공기에 대한 관제
- 3.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등"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지 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 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항공교통관제 업무</u>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u>
<u>제5항</u>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ਗੀ 4 ਵੇਂ ਸੀ
<u>제4호까</u> 기 개7호 미 개7호이오에 된다
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 하는
<u>하는</u>
,

# ② ~ ⑩ (생 략)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

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생략)
- 2. 제35조제1호부터 <u>제4호까지</u> 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 정된 전문교육기관
- 3. ~ 8. (생 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 1항부터 <u>제3항까지</u>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제4호까지</u>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3. ~ 8. (현행과 같음)
③
<u>제4항까지</u>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 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 용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제공 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제1항의</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준하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훈련체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	863	소(형	공교	통업	무	증명	병의	취	소
	등)	1	국토	E D !	통부	사장	만은	항	공
	교통	등업.	무증기	경을	벋	<u></u> 같은	자.	가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	<b>구에</b>	해	당
	하는	= 7	병우여	는	항	공교	1통9	날무	증
	명을	을 추	리소ㅎ	H거ι	7 (	6개-	월 c	기내	의
	기긴	<u>}</u> 을	정	하여		항공	무교통	통업	무
	제공	급의	정기	기를	명	할	수	있	다.
	다민	ŀ, >	세1호	또:	는	제8.	호에	해	당
	하는	= 7	병우어	]는	항	공교	1통9	날무	증
	명을	을 추	소히	-여ㅇ	} र	한다	•		

1. (생략)

<신 설>

- 2. ~ 8. (생략)
- ② (생 략)
-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 8의2. (생 략)
  - 9.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 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u> 두</u> )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
로 심사를 한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4조(청문)
1 - 0이9 (처체코 가야)

- 1. ~ 8의2. (현행과 같음)
- 9. 제43조제1항, 제3항 또는 제 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 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 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

10. ~ 25. (생략)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조 ~ ④ (생 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u> 또는 항공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 14. (생략)
  - ⑥ ~ ⑩ (생 략)
-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1. ~ 13. (생 략) <u><신 설></u>

ス)	

<u></u>
10. ~ 25. (현행과 같음)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한국</u>
교통안전공단
1. ~ 14. (현행과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수료 등) ①
<u>제42</u> 조의2제3
항, 제135조제2항
<u>제10항</u>
<u>위탁받은 기관</u>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38조제3항에 따라 심
사에 응시하는 자

- 14. 제38조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한정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반으려는 자
-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 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생략)

<신 설>

17. ~ 39. (생 략)

② (생략)

14. <u>제38조제4항</u>
15. <u>제38조제5항</u>
16. (현행과 같음)
16의2. 제42조의2에 따라 관제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17. ~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